

경기도 공고 제2015 - 587호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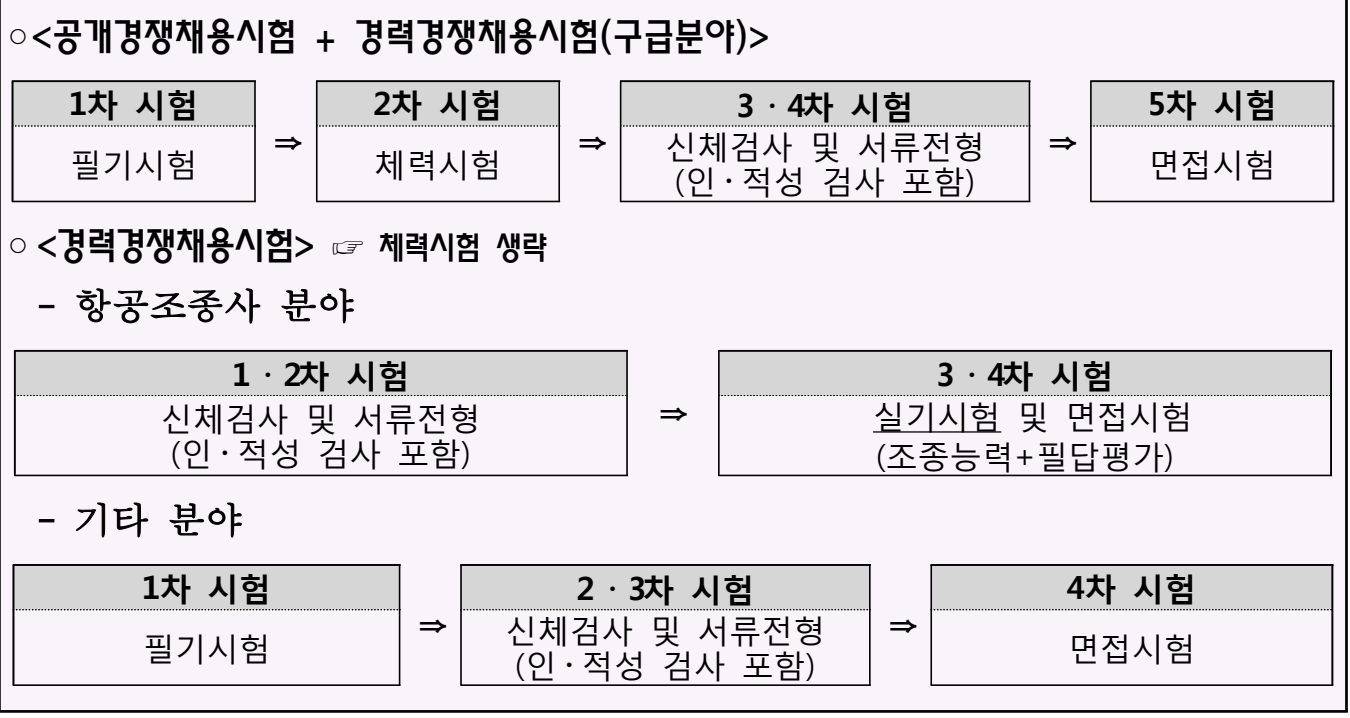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구분 | 분야 | | 임용 계급 | 선발예정인원(명) | | | | 시험과목 |
|----------------|--------------|-------|----------|-----------|----|-----|----|---|
| | | | | 총계 | 양성 | 남 | 여 | |
| 총 계 | | | | 399 | 9 | 347 | 43 | |
| 공개 경쟁 | 소 방 | | 소방사 | 283 | | 255 | 28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경력 경쟁 채용 | 소 계 | | | 116 | 9 | 92 | 15 | |
| | 안전점검 예방요원 | 소방설비 | 소방사 | 10 | | 10 |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 | 건축 | 소방사 | 10 | | 10 | | |
| | | 전기 | 소방사 | 10 | | 10 | | |
| | 구 급 | | 소방사 | 60 | | 45 | 15 | |
| | 심리상담 | | 소방교 | 2 | 2 | | | |
| | 언론공보 | | 소방교 | 2 | 2 | | | |
| | 화재조사 | 화 학 | 소방장 | 1 | | 1 | | |
| | | | 소방교 | 6 | | 6 | | |
| | | 전 기 | 소방교 | 1 | | 1 | | |
| | 정보통신 | 정보보안 | 소방교 | 2 | 2 | | | |
| | | 시스템관리 | 소방사 | 3 | 3 | | | |
| | 차량정비 | | 소방사 | 4 | | 4 | | |
| | 항 공 | 정비사 | 소방교 | 2 | | 2 | | |
| 조종사 | | 소방장 | 3 | | 3 | | | |

※ 소방사로 경력경쟁 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 영어 등으로 한다.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시험방법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선택형 필기시험(항공조종사 분야 제외)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11:40 (100분)], 경력경쟁채용[10:00~11:00 (60분)]
- 문제출제 : 경기도소방학교 자체출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

| 과 목 | 출 제 범 위 |
|--------|--|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 과 학 |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 항공조종사 분야는 실기시험 (조종능력 + 필답평가 실시)
- 필답평가 범위 :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등 항공운항 지식·기술 검정

《합격자 결정》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구급분야는 2배수, 기타 경력경쟁분야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로 결정
 -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점)가 있을 때에는 해당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붙임4 참조】

나. 체력시험(소방분야 및 구급분야만 해당)

- 시험종목 : 6종목【붙임3 참조】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시험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합격자 결정》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 ※ 합격기준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로 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서류전형 :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신체검사 당일 서류접수 실시
-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라. 면접시험 [항공조종사는 실기시험(조종능력+필답평가)병행]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실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항공조종사는 실기시험 65%(헬기조종능력 + 필답평가), 면접시험 10%의 합 7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기타 경력경쟁채용시험(구급분야 제외)은 필기시험 65%, 면접시험 10%의 합 7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 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합산한 거주기간이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 ~ 40세 이하 | 1974. 1. 1 ~ 1994.12.31 |
| 경력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1974. 1. 1 ~ 1995.12.31 |

※ 항공조종사 또는 항공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 색 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마. 자격 및 경력요건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
|-----------------|--|---|--|
| 안전점검 예방요원 | 소방 설비 | ◇ 소방설비(기계분야) 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건축 | ◇ 기 사 : 건축기사, 건축설비, 실내건축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 |
| 구 급 (경력자) | <p>◇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p>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p> <p>※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p> <p>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p>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p> <p>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p> <p>⑤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p> <p>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p> <p>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p> <p>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p> <p>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p> <p>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 | |
| 심리상담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언론공보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채용분야 |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 화재 조사 | 화학 (소방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과 · 응용화학과 · 화학공학과 · 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 화공 관련 기술사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
| | 화학 (소방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과 · 응용화학과 · 화학공학과 · 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화학과 · 응용화학과 · 화학공학과 · 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화공 관련 기술사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
| | 전기 (소방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과 ·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기과 ·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전기 관련 기술사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
| 정보 통신 | 정보 보안 (소방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기사 :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보보안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정보보안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시스템 관리 (소방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무선설비 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산·통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산·통신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항공 | 조종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법」 제26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 ◇ 최근 2년 이내 비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③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중 정조종사로 5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자 ※ 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④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 | 정비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정비사(회전익 필수) 자격증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차량 정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차량(펌프차, 굴절·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차량 제조정비업 ▶ 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 험 일 정 | | | |
|---------|---|-----------------------|-----------|
| 시 험 명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원서접수 | 6. 17.(수) 09:00 ~ 6. 19.(금) 21:00 (취소기한 : 6. 26.(금). 24:00 까지) | | |
| 필기시험 | 7. 2.(목) | 7. 11.(토) | 7. 28.(화) |
| 체력시험 | 7. 28.(화) | 8. 3.(월) ~ 8. 7.(금) | 8. 13.(목) |
| 신체검사 | 8. 13.(목) | 8. 17.(월) ~ 8. 21.(금) | 9. 9.(수) |
| 서류전형 | | | 9. 25.(금) |
| (인)적성검사 | | | 면접위원 배부용 |
| 면접시험 | 9. 9.(수) | 9. 15.(화) ~ 9. 22.(화) | 9. 25.(금) |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소방학교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합격자 발표시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위탁업체인 (주)진학어플라이(<http://ggfire.jinhakapply.com>)에 직접 접속
-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를 통하여 접속
-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나. 접수기간 : 원서접수 기간 중 첫날 09:00부터 ~ 마지막 날 21:00까지

※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원서사진 :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너무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 가산점 표기 :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직접 가산점 표기

|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
|---|
| <p>○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종료 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전일[2015. 7. 10.(금). 24:00]까지 유효하게 입력된 사항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따라서, 2015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서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생은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마치고,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p> <p>※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p> |

바.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특전 대상자는 수정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는 2015. 6. 26.(금). 24:00 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응시수수료(단, 결제 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수수료 반환안내》

- ◇ 원서접수 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취소 :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 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2015. 7. 2.(목).부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주)진학어플라이(<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 가 산 비 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가산점은 각각 합산적용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
| 자격증 등 소지자 | 자격증 (면허증) | 과목별 만점의 1%~5% | |
| | 사무관리 | 과목별 만점의 1%~3% |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모집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 / 붙임 1 참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 (1~5%, 별표6)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5. 7. 10. (금). 24:00)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주)진학어플라이(<http://ggfire.jinhak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바랍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적용가산점은 각각 부여됩니다.
-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하는 시간까지 입실하며, 제1차 필기시험의 경우 OMR 카드 답안지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은 답안지 인식오류 방지를 위해 감독관이 지급한 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자는 제1차 필기시험장에서 휴대폰, 스마트워치, 전자시계,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전자기기를 지참한 경우 시험 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바. 자격증·면허증·경력사항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단, 기상상황 등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된 일정을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 후 시행할 예정임)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인재개발팀(☎ 031-329-032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1부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4.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1부

5.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 문 의 처 :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

▶ 전 화 : 031) 329 - 0321 ~ 6

▶ 홈페이지 : <http://www.fire.sc.kr>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 (봉명리)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문의사항 : (주)진학어플라이

▶ 전 화 : 1544-7715

▶ 홈페이지 : <http://ggfire.jinhakapply.com>

경기도소방학교 시험정보 : <http://www.fire.sc.kr/> 시험정보 / 신규채용 / 공고고시

[붙임 1]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 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 술 사 · 기 능 장 ① |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 (기능사)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 |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
|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 사무관리 ②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 초과 시 5%만 가점

※ 기타 통폐합 및 명칭 변경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붙임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 내 용 |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
| | 2) 소방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 | 2) 연기 및 화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 분 야 | | 내 용 |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 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 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 복 오 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4 참조

[붙임 4]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 비교 >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5]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학교연락처 | | 응시자연락처 (휴대폰) | |
| 학교명 | | 학과 (전공) | 졸업 일자 년 월 일 |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_____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 | | |
|-----|------|----|-----|
| 담당자 | (직) | 성명 | (인) |
| | (전화) | | |

2015 . . .

총(학)장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